

(2019. 5. 12)

사단법인 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

定 款 (정관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”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길 19 백석빌딩 303호에 둔다.

제3조(목적) 이 법인은 가족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인격형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,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.
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학교부적응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활동
2. 폭력 피해 및 가해 아동 .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
3. 게임중독 및 약물중독 청소년의 치유를 돋는 활동
4. 위기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
5.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심리지원활동
6.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
7. 보호관찰 대상 및 교정시설 수용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지원활동
8.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세미나, 워크숍 활동
9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자격)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,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한다.

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.

-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제 규정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단,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(회원의 상별) ① 본 법인의 발전 및 목적달성을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포상할 수 있다.

②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,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징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.
 - 2.감사 2명으로 한다.
-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다.

제11조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원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이사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대표이사, 상임이사, 감사는 2년으로 하고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대표이사의 선출과 임기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, 궐위되었을 때에는 즉시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한다. 이 경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대표이사의 직무 대행) ①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대표이사가 이를 소

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6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3. 3분의 1이상 회원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2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⑥ 사업계획의 승인
- ⑦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5조(총회의 의사록)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,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제26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7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8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 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이사회의 소집권을 가진 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9조(서면결의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0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3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-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32조(의결제척 사유)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6 장 재 정

제33조(재산의 구분)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4조(재산의 관리)

① 제33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5조(재원)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법인의 설립자

2. 법인의 임원

3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8조(예산 편성 및 결산)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9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0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무 부서

제41조(설치) 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42조(법인해산)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.

제43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4조(업무보고) 이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연도 말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5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(구 보건복지가족부)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6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9 장 지부설립 운영

제47조(지부설립 및 운영) 본 법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) 이 정관의 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제4조(창립회원)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의 설립당시 회원은 “별지5 회원명단”과 같다.

제5조(설립자 기명날인)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1차 개정 : 2010년 9월 14일

2차 개정 : 2011년 4월 12일

3차 개정 : 2013년 1월 13일

4차 개정 : 2015년 1월 25일

5차 개정 : 2016년 1월 17일

6차 개정 : 2019년 5월 12일

사단법인 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

2019.5.12.

대표 이사 윤 순희 (인)

상임 이사 안 정희 (인)

이사 정 향미 (인)

이사 이 선욱 (인)

이사 최 명선 (인)

이사 이 혜경 (인)

이사 정 예영 (인)

이사 황 경숙 (인)

이사 김 양자 (인)

이사 진 은주 (인)